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4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원이 · 박홍배 · 윤준병
허성무 · 장철민 · 서삼석
김한규 · 서미화 · 조계원
임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와”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로, “特別市·廣域市·道選舉管理委員會(이하 “市·道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와”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로, “區·市·郡에는”을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에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個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를 “2個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個의 區·市·郡안에 2個 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를 “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個의 區·市·郡의 管轄 區域안에 2個 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 區·市·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乙·丙”를 “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設置) ① (생 략) ② <u>特別市・廣域市・道</u>(이하 “市・道”라 한다)와 區・市(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郡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u>特別市・廣域市・道選舉管理委員會</u>(이하 “市・道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區・市・郡에는 人口數・投票區數・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에 <u>2個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u>를 둘 수 있다.	第2條(設置)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u>(이하 “시・도”라 한다)와와----- ----- ----- ----- ----- ----- -----특별시・통합특별시 <u>・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u> <u>(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u>----- ----- ----- ----- ----- <u>통합특별시와 구・시・군에는</u>----- ----- ----- -----2個이 <u>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1個의 區·市·郡 안에 2個 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두는 경우의 각 管轄 區域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個의 區·市·郡의 管轄 區域안에 2個 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 區·市·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乙·丙 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 (생략)

를-----
-----.

③ -----

-----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

④ -----

-----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